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군
건명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1. 컨설팅 개요

○ 처분 개요

- 처분일자: 0000. 0. 0.
- 처분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 조사대상 기간: 0000. 0. ~ 0000. 0.(00개월)
- 위반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 ※ 부당 세부내용: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 부당청구액: 00,000,000원
- 행정처분 내용: 업무정지 5일(1/2 감경적용하여 10일→5일 업무정지)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00,000,000원(부당청구액의 2배)
- ※ 과징금 납부기한: 0000. 0. 00.

《 대상기관 현황 》

- 기관명: 00000000
- 대표자: 000
- 소재지: 전남 00군 00면
- 이용현황: 정원 00명, 현원 00명 ※종사자 00명
- 급여종류: 0000시설

○ 지금까지 추진 경과

- 현지조사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 : 0000.00.0. ~ 0000.00.0.(4일간)
-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송부(공단→군) : 0000. 00. 0.

- 현지조사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송부(공단→군) : 0000. 00. 00.
-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 통지 : 0000. 0. 00. / 0000. 0. 00.(청문)
- 수차례 협의(과징금 처분 시 분납 구두 문의) : 0000. 0. ~ 0.
- 최종 면담 실시 : 0000. 0. 00.
- 처분통보 : 0000. 0. 0.

2. 컨설팅 요청 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과징금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했을 시 관련 조항 및 관련 지침의 부재로 행정청에서 연기 및 분할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 처분 당사자에게 답변을 할 기준이 부재함.
-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9조에(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따르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두어 개별법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과징금 분할납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또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과징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법에 과징금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무엇을 근거로 분할납부기간 및 횟수를 두어야 할지 어려움이 존재함.
- 이와 달리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적용이 되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서는 과징금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기준이 존재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해당 사유 및 분할납부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세부 내용은
 1. 노인장기요양법상 과징금 분납에 관한 개별 조항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 대상 기관에서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분할납부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2. 분할납부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분할납부기간을 산정할지

3. 검토 결과 및 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에는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음.

◇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하고,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간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노인장기요양법상 과징금 분납에 관한 개별 조항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 대상 기관에서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분할납부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간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는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만 나열되어 있을 뿐, 과징금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음.

◇ 그러므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붙임1서식)에 같은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00군에 신청하고, 00군은 신청한 내용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분할납부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그리고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신청한 내용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자는 당초 처분대로 서면 통지 후 20일 내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고, 00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것임.

2. 분할납부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분할납부기간을 산정할지에 대하여

- 본 건 과징금 부과 근거 법령 등에 별도의 분할납부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여 처분기관의 이같은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전까지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 취지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분할납부기간 등을 결정하되, 과징금 분할 납부의 횟수·간격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00군의 일관성 있는 처분을 위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나와 있는 과징금 분할납부 세부 기준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